

지시고 기탄없는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한장훈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참 조〉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피임약제기구(먹는피임약, 콘돔, 자궁내장치)중 먹는 피임약
의 보급수수료를 인상하고 자궁내장치의 수수료를 신설하여 가족계획재활용 사업비
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코자 함.

2. 주요골자

-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인상
 - 먹는피임약(1개월분) : 200원 → 230원
 - 자궁내장치시술(1건) : 무 료 → 2,000원

3. 관계법규

- 모자보건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제5조

4. 기타참고자료 : 별첨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와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 1인당 1개월분 먹는피임약(21정입 또는 28정입 1싸이클)의 수수료는 230원, 콘돔 1갑(6개입)은 200원, 자궁내장치 1건시술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다만, 가족계획요원 또는 대한가족계획협회직원 이외의 자를 통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먹는피임약은 330원, 콘돔은 3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보급금액중 100원은 실제 보급하는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징수처리비의 교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매 분기중에 징수한 수수료액을 기준으로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에 징수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단, 자궁내장치 수수료중 전당 1,000원은 전액 피임시술 사후관리비로 사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3조 (수수료) 1인당 1개월분 (먹는피임약 21정입 또는 28정입 1싸이클, 콘돔 6개입 1갑)의 수수료는 200원으로 한다.</p> <p>다만, 가족계획요원 또는 대한가족계획협회 직원이직의 자를 통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300원으로 한다.</p> <p>이 경우 300원중 100원은 실제 보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p>	<p>제3조 (수수료) 1인당 1개월분 먹는피임약 (21정입 또는 28정입 1싸이클)의 수수료는 230원, 콘돔 1갑(6개입)은 200원, 자궁내장치 1건 시술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p> <p>다만, 가족계획요원 또는 대한가족계획협회 직원이직의 자를 통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먹는피임약은 330원, 콘돔은 300원으로 한다.</p> <p>이 경우 보급금액중 100원은 실제 보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p>
<p>제5조 (정수처리비의 교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u>대분기중 정수한 수수료액을 기준으로 대분기 경과후 1월이내에 정수역의 100분의 30에 해당액을 정수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u></p>	<p>제5조 (정수처리비의 교부)</p> <p>..... <u>대분기중여</u></p> <p>.....</p> <p>..... <u>해당하는 금액을</u></p> <p>.....</p> <p>.....</p> <p>단, 자궁내장치 수수료중 건당 1,000원은 전액 피임시술 사후 관리비로 사용한다.</p>

참고자료

관련법규발체사본

關聯根據法令(部分拔萃)

● 母子保健法 [1986·5·10]

法律第3824號全文改正

第12條 (避妊施術 및 避妊藥劑의 보급)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保健社會部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願하는 婦에게 避妊施術을 행하거나 避妊藥劑를 보급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시행규칙 [1987·4·17]

보건사회부령제800호건문개정

제8조 (피임약제등의 보급)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피임시술을 받는 것이 부적당한 자 또는 터울조절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피임약제 또는 기구 (이하 "피임약제등"이라 한다)를 무료 또는 실비로 보급할 수 있다.

제9조 (피임시술의 종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행할 수 있는 피임시술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불임수술
2. 난관불임수술
3. 자궁내피임장치시술

●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 [1982. 2. 5]

조례 제1145호

개정 1987.7.20	조례 제1207호	개정 1987.9.18	조례 제1559호
1986.9.12	조례 제1488호	1988.2.26	조례 제1591호
1987.1. 9	조례 제1514호	1988.8.12	조례 제1638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절차와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위탁) 수수료는 피보급자의 관할 시·군에 그 징수를 위탁한다.

제3조 (수수료) 1인당 1개월분 (먹는 피임약 21정입 또는 28정입 1싸이클, 콘돔 6개입 1갑)의 수수료는 200원으로 한다. 다만, 가족계획요원 또는 대한가족계획협회직원 이외의 자를 통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3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300원중 100원은 실제보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 (수수료의 징수 및 불입) 수수료는 매보급시마다 시·군에서 이를 징수하며 당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도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처리비의 교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매분기중 징수한 수수료액을 기준으로 매분기 경과후 1월이내에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액을 징수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의 면제)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조 (수수료의 재 활용) 수수료는 이를 재원으로하여 대한가족계획협회도지부에 보조함으로써 가족계획 사업 추진에 재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이 조례는 1982년 2월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 먹는피임약보급수수료징수 조례(조례 제291호 1968.5.17)와 충청북도콘돔보급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74호 1977.1.1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7.20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9.12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1.9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9.18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2.26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8.12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1988년 8월12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

니다.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1992년 4월 28일 제출되어 4월 29일 회부된 충청북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2년 4월 28일
- 회부일자 : 1992년 4월 29일

3. 제안이유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피임약제기구(먹는피임약, 콘돔, 자궁내장치)중 먹는 피임약의 보급수수료를 인상하고 자궁내 장치의 수수료를 신설하여 가족계획 제활용사업비와 피임시설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코자 함.

4. 주요골자

-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인상
 - 먹는 피임약(1개월분) : 200원 → 230원
 - 자궁내장치 시술(1건) : 무료 → 2,000원